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71
----------	-------

발의연월일 : 2018. 7. 6.

발의자 : 조원진 · 홍철호 · 박완수

유기준 · 함진규 · 박명재

정종섭 · 박대출 · 주호영

곽대훈 · 이완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사업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지구촌 사회개발의 성공 모델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됨.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모델 개발과 보급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 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u><신 설></u></p> <p>② · ③ (생 략)</p> <p>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의 규정</u>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⑤ -----[제4항까지]----- ----- ----- ----- -----.</p>